

제184회국회

# 국회 본회의 의회의록

제 11 호

국회사무처

1997년7월30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계속)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3.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4.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5. 행정규제기본법안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안
7. 한국주택은행법 폐지법률안
8.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9.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10. 여신전문금융업법안
11.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안
13.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1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1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16.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1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안
19. 한국담배인삼공사법 폐지법률안
20. 재난관리법 개정법률안
21.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22.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24.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25. 잠업법 중 개정법률안
26. 한국진도건보호육성법 개정법률안
27.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2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30.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개정법률안
31. 국제선박등록법안
32.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33.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3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대안)

35. 산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
3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
37.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38.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39.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40.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41.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42. 통신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43.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44.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
45.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46. 생명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47.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법률안
48. 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안
49.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50. 호소수질관리법안
51.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52.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5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54.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법률안
55.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56.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5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58.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60.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61.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
6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대안)
63.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
64.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65. 한국한의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6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68.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69.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70.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
72.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73.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계속) .....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3.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4.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5. 행정규제기본법안(정부 제출) .....	6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	6
7. 한국주택은행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6
8.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9.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10. 여신전문금융업법안(정부 제출) .....	6
11.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박희태 · 박상천 · 이정무 의원 외 278인 발의) .....	6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영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	7
13.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1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1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16.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1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	8
19. 한국담배인삼공사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8
20. 재난관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21.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22.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내무위원장 제출) .....	8
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정부 제출) .....	8
24.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25. 잠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26. 한국진도건보호육성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27.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이강두 · 이우재 · 김영진 · 이길재 · 권오을 의원 외 80인 발의) .....	9
2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2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30.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31. 국제선박등록법안(정부 제출) .....	15
32.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33.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3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대안)(통상산업위원장 제출) .....	16
35. 산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3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37.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38.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39.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40.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41.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42. 통신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43.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44.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45.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46. 생명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이상희 · 서정화 · 박성범 · 최병렬 · 김형오 · 박헌기 · 유용태 · 오양순 · 김호일 · 김무성 · 윤원중 · 백남치 · 김도연 · 김명섭 · 황성균 · 장영철 · 황규선 · 김태	

호·권영자·김중위 의원 발의) .....	18
47.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18
48. 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49.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50. 호소수질관리법안(정부 제출) .....	18
51.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52.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5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54.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55.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56.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5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58.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외 24인 발의) .....	20
60.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강희 의원 외 20인 발의) .....	20
61.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	20
6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0
63.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0
64.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0
65. 한국한의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6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한이현·김충일·서훈·조진형·김영일·장영철·현 경대·김기재·김진재·이국현·이강두·백남치 의원 외 10인 발의) .....	21
68.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한이현·김충일·서훈·조진형·김영일·장영철·김 기재·김진재·이강두·백남치 의원 외 10인 발의) .....	21
69.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70.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정부 제출) .....	24
72.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73.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 .....	24

(15시07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다시  
잠시 정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정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협의  
관계로 본의 아니게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모두 73건입니다.

이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와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따  
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제안설  
명과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0분입니다마는 7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채영석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관계 국무위원들이 한 분도 안 나왔어요.)

(○박광태 의원 의석에서 — 제안자가 없는 법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의장님, 이것은 의원 입법만 통과시키고 제안자가 없는 법은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안자가 없는 법을 어떻게 통과시켜요? 유인물도 좋은데…… 제안자가 있어야 혹시 무슨 얘기가 있을지, 어떤 문의가 있을지 그것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 법을 어떻게 통과시켜요?)

가만히 계세요. 박광태 의원,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는 의원도 지금 이러한 점에서 양해를 하시고 그래서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또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된 법률이나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거나 토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계장관의 출석이 당연하고 또 도의적으로는 일응 나와 있어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동안 시간관계로 저희들 회의가 지연되었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박 의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계속) (20시2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2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규제기본법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규제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행정규제기본법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국주택은행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20시2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주택은행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한국주택은행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안(정부 제출)**

(20시2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0항 여신전문금융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여신전문금융업법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박희태·박상천·이정무 의원 외 278인 발의)

○의장 김수한 다음 제11항입니다.

이 11항은 정말 국민적 관심사였고 또 그동안 각 교섭단체 간에 초미의 현안 안건이었던 그야말로 정치개혁법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진통을 거쳐서 오늘 극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척 다행스럽고 또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수고 많으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1항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박희태·박상천·이정무 의원 외 278인)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2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이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2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3항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4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5항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6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20시2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7항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개정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안 (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8항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안 심사 보고서

(개정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한국담배인삼공사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9항 한국담배인삼공사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한국담배인삼공사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개정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재난관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0항 재난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재난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3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내무위원장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2항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3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4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잠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3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5항 잠업법 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잠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한국진도건보호육성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진도건보호 육성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한국진도건보호육성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이강두·이우재·**

김영진·이길재·권오을 의원 외 80인 발의)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7항 낙농진흥법 개 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상만 의원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반대토론문

1997. 7.

국회의원 이상만

(자민련, 아산시 출신)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은 96. 8. 28에 농림부가 입법예고하고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여 여기에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를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원유의 구입판매가격을 제한하며 수급조절을 하고 원유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고 있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합니다.

○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출 경위와 반대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의 제출 경위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은 14대 국회에 정

부안으로 제출되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심의되지 못하고 계류하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농림부가 15대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96. 8. 28에 입법예고하고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자 농림부는 정부안으로 제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1997. 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여 정부안으로 제출하려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대체하고자 하여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2. 당초의 농림부안에 대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요지

첫째,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여 원유의 가격 및 수급조절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행위 또는 상품거래 등의 제한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의 사업단체의 금지행위가 되며

둘째,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를 낙농진흥회에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에 반하며

셋째, 원유의 생산자인 낙농가는 진흥회에 생산원유를 판매하도록 하고 원유의 수요자인 유가공업체는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게 하고 있어 낙농가와 유가공업체의 헌법에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원유의 생산자단체와 수요자단체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를 설립하는 것은 사업자단체인 낙농진흥회가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유생산자인 낙농가와 원유수요자인 유가공업체 간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고

다섯째, 원유의 구입과 판매의 주체인 진흥회로 하여금 원유검사를 담당케 하는 것은 검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진흥회에서 원유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요자가 검사를 하게 되어 감사비용을 중복지출하도록 될 우려가 있으며

여섯째, 지금까지 원유수요자가 자유롭게 구입하던 것을 진흥회가 집유조합을 지정하여 집유조합을 통하여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

법에 반하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음.

## 3.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개정안의 문제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명의로 제출된 낙농진흥법 개정안에서는 농림부안으로 성안된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의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낙농진흥회에 낙농가와 유가공업체의 가입 강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5조에서 「낙농관련 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 사업자단체에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둘째, 낙농가와 진흥회 간의 원유의 계약생산과 진흥회와 원유수요자 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율적 거래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에 의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개정법안이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개정안 제17조제1항에서 농림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고 제2항에서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진흥회,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동 개정안 제19조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진흥회에 가입 강제, 가격 지정, 수급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헌법의 결사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거래의 금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때의 문제점

첫째, 헌법위반과 공정거래법위반 가능성의 문제

정부안으로 제출되면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헌법과 경제기본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심의가 가능함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적용제외조항을 두면서 동법 제63조에서 관계행

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령의 제정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제관계법을 정부안으로 제정하고자 할 때에 경제헌법 또는 경제기본법인 공정거래법에 배치되는 법의 제정을 규제하고 있음.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된 낙농진흥법 개정안은 농림부안에 대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법안에 대한 의원입법은 보류되어야 마땅합니다.

둘째, 국회에 대하여 낙농진흥법의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농림부장관의 약속이 있었는데 의원입법으로 제정함은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가) 96. 8. 28 농림부가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성안,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하자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면 낙농진흥법의 개정의 의의가 없게 되자 농림부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의원입법으로 대체입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나)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96. 11. 20 제181회국회 예결위 제12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당시 강운태 농림부장관에게 정부안으로 성안 입법예고된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에서 반대한다고 하여 의원입법으로 대체입법하고자 하는 것을 추궁하자 강운태 당시 농림부장관은 정부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아직도 정부안으로서의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 않는데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의견의 불일치로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의결함은 국회가 정부의 특정부처의 시너 역할을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정부와 국회가 지향하는 규제혁파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가) 우리는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1995. 1. 5 공포하여 시행하

면서 97. 4. 10에도 개정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기도하고 있으며

(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97. 6. 23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을 오늘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다)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까지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자율적으로 거래하고, 점유하고, 유가공업체가 스스로 검사하던 것이 농림부, 낙농진흥회,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 지정, 거래가격 규제, 낙농진흥회 가입 강제, 품질검사 등 규제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낙농진흥법 개정안은 99. 1. 1 시행되자마자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받으면 폐지될 것이 분명합니다.

넷째, 상당한 낙농가가 낙농진흥회의 가입을 반대하며 거의 모든 유가공업체는 낙농진흥회의 설립과 점유의 일원화, 관청이나 진흥회에 의한 원유의 품질검사를 반대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낙농진흥회를 신설하고 규제 일변도의 낙농진흥법을 개정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농림부는 단위농협을 경제단위로 통합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을 제정·통합을 촉진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여 축협의 업무를 분산시키고자 하는바 이는 낙농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시발로 보여지며 이는 돼지협동조합, 소협동조합 등 가축 종류별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시발로까지 생각이 됩니다.

5. 기타 헌법 제119조의 경제상의 자유보장규정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금지규정 위반부분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낙농진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 ‘낙농’이라 함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라 함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라 함은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라 함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관련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중 낙농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6. ‘낙농관련 단체’라 함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관련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낙농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2. 낙농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4. 원유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6. 학교우유급식, 소비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확대에 관한 사항
7.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낙농지구)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낙농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①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진흥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의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업무
6.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진흥회는 매년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젖소 사육 전망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별 원유생산 계획량
4.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기타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공급계획
5. 원유 및 유제품 수급안정을 위한 사항
6.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과 관련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에

게 원유수급, 판매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 및 원유 수요자는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원유의 계약생산) ①진흥회는 원유의 생산 및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 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이를 구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생산량, 진흥회의 원유구입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등) ①원유생산 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계약낙농가'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생산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흥회에 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

제11조(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 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의 전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원유의 계약공급) ①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판매량·판매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유수요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집유조합 지정 등) 진흥회장은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장은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원유 검사) ①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원유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원유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집유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 기관으로부터 원유검사 결과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계약낙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낙농상황의 파악 등) 진흥회는 원유생산 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 안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두수 및 원유생산량 등 낙농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 신청) 낙농가·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감독) ①농림부장관은 진흥회·원유수요자·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회·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2. 원유생산계약 및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유조합의 원유수요자에 대한 원유 인도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계서류와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이행상황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진흥회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축협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와 원유생산계약(원유 구입가격은 진흥회가 정한 가격으로 함)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와 원유생산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동의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 구입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가 정한 원유판매가격과 원유수요자별 물량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와의 원유공급계약 및 판매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결정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조 동향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부과·징

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회의 설립 준비)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축협중앙회와 낙농관련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회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진흥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진흥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진흥회에 그 업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낙농진흥회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6. 결론

(가) 농림부안에서 의원입법으로 대체된 이번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낙농진흥회의 낙농관련단체의 가입이 자율화되었고 낙농가와 진흥회, 그리고 진흥회와 유가공업체 간에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낙농진흥회

에의 가입이 자유이고 낙농가, 진흥회, 유가공업체 간의 거래가 자유가 보장이 된다면 현재와 같은 낙농진흥회에 가입하는 낙농관련단체가 없을 것이며 집유 일원화는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낙농진흥회의 설립의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낙농진흥법의 개정안은 진흥회에의 가입 강제와 진흥회로 원유판매 및 원유공급처가 단일화가 되어야 존립의의가 있는 것임.

(나) 낙농진흥법 개정 목적이 원유 및 유제품의 수입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유생산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데 있으나 생산조절은 가격의 자율화에 의하여 조절되어야 하지 정부의 개입에 의한 수급조절은 WTO협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을 전제로 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모든 농산물이 수입자유화로 인하여 타격을 받고 있는데 원유에 한하여 정부 개입에 의한 수급조절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 또한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이 99. 1. 1로 시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농림부장관이 국회에 약속한 대로 정부안으로 제출하여 올 때까지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보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헌법의 규정에 합치하고 경제기본법인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0시3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8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상정합니다.

(참 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9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상정합니다.

(참 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0항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개정법률안 상정합니다.

(참 조)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국제선박등록법안(정부 제출)**

(20시3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1항 국제선박등록법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국제선박등록법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2항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3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3항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대안)(통상산업위원장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4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대안)  
(통상산업위원장)  
(부록에 실음)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산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5항 산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산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상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3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6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상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7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상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8항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상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3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9항 의장법 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상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법안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잠깐 물을 마신 것은 이 사회봉대가 약간  
열이 나서 그랬습니다.

**40.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0항 상표법 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상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3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1항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상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통신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2항 통신개발연구원 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통신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3항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3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4항 전파법 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5항 우편법 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생명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이상희 · 서정화 · 박성범 · 최병렬 · 김형오 · 박헌기 · 유용태 · 오양순 · 김호일 · 김무성 · 윤원중 · 백남치 · 김도언 · 김명섭 · 황성균 · 장영철 · 황규선 · 김태호 · 권영자 · 김중위 의원 발의)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6항 생명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생명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20시3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7항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전기통신공사사업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8항 전기통신공사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전기통신공사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9항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호소수질관리법안**(정부 제출)

(20시4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0항 호소수질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호소수질관리법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1항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 안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2항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  
(참 조)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 안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4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3항 폐기물의국가간 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  
(참 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 안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4항 환경오염피해분 쟁조정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  
(참 조)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 안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5항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  
(참 조)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 안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6항 수도법 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  
(참 조)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 안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4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7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  
(참 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 안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8항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외 24인 발의)

(20시4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9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강희 의원 외 20인 발의)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0항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

(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1항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0시4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2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3항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4항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한국한의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4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5항 한국한의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한국한의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6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한이현 · 김충일 · 서훈 · 조진형 · 김영일 · 장영철 · 현경대 · 김기재 · 김진재 · 이국현 ·

이강두 · 백남치 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7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주택소유상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한이현 · 김충일 · 서훈 · 조진형 · 김영일 · 장영철 · 김기재 · 김진재 · 이강두 · 백남치 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8항 주택소유상한에 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주택소유상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역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  
다.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  
의록에 게재토록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정안 반대 의견  
○천정배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경기도 안  
산시 출신 천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법안 중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제20조1항4  
호의2, 즉 법에 규정된 가구별 소유한도를 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어 마땅히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라도, 그 택지가 이 법이 최  
초로 시행된 1990년 3월 당시부터 1가구 1택지에

해당했고, 또한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오며 과거 5년 동안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더 이상 부과금을 물지 않도록 한다는 개정부분입니다.

이는, 7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토지공개념에 예외를 인정해 187명이라는 극소수 국민의 부담을 면제시켜 주자는 것인데, 저는 그런 예외를 인정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개정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 골자, 그리고 법 시행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토지공개념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토지는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산과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럼에도 재생산이 곤란한 물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선진국에서부터 토지공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1980년대 후반에 대도시와 그 인근의 중소도시의 경우 상위 5%의 토지소유자가 전체 사유지의 70% 이상을 보유하는 등 토지소유가 매우 편중돼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렸고 땅값은 한시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지금도 높은 땅값은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장애요소입니다. 한 뼘의 토지도 가지고 있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지난 89년 토지공개념을 본격 도입하여 만든 법률 중 하나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입니다.

이 법은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200평, 시 지역에는 300평, 읍·면 지역에는 400평으로 제한하고, 그 한도를 넘는 택지소유자에게 해마다 한 번씩 초과소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90년 초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한을 넘는 넓은 택지를 가진 국민들은, 그 초과부분을 처분하지 않는 한, 부담금을 내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초과부분을 처분할 여유도 주지 않고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년 동안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도를 넘는 택지를 소유한 국민은 그 2년 내에 초과부분을 처분함으로써 부담금을 물지 않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가구 1택지만을 소유하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오던 사람 가운데에는 한도초과부분을 처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땅을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그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애초에 부담금을 물리지 않도록 제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든지 한도초과부분을 처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택지소유자는 건설부장관에게 그 택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경우 건설부장관은 매각을 알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매수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택지를 소유한 국민은 이 매수청구를 활용해 부담금 납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 특히 1가구 1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는 동안 ‘택지소유의 편중을 완화하고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6대 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평 이상을 소유한 가구가 6만 2천 가구에 이르렀고, 이들이 전체 대지의 3분의 1을 소유해 가구당 평균 508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전국적 통계로는 92년에 1만 4414건의 부과금이 부과됐고 작년에는 6835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1가구 1택지로서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92년에 803건이었으나 작년에는 187건으로 역시 대폭 줄었습니다.

이는 택지를 초과소유하던 국민 중 대다수가

초과면적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부담금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1가구 1택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을 물고 있는 187명의 국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안은 이들에게 영구적으로 더 이상 부담금을 물리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소유상한을 초과한 1가구 1주택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부담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택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줌과 동시에 위헌시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앞에서 살펴본 기득권 보장 장치, 즉 2년의 유예기간,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조치, 정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등이 완비돼 있음에 비추어, 아직도 부담금을 물고 있는 187명에게 과도한 규제나 부담금을 지우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보장장치로 억울한 사람은 모두 구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187명은 이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초과소유 택지를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부담금 납부를 무릅쓰고라도 초과택지를 소유하겠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면에 7년이 지나는 동안 다수 국민은 법의 취지에 순응해 초과택지를 처분했습니다. 그 강제된 처분으로 실제상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초과택지를 처분하지 않고 버티 온 187명에게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부담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특혜를 준다면, 그동안 법에 순응해 막대한 손실을 입어가면서 택지를 처분한 선량한 다수와 어떻게 형평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앞으로는 택지를 초과소유하는 사람들이 5년 또는 그 이상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면제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 가서 국회는 또 그들 몇 명을 위해 법을 개정할 것입니까?

법의 생명은 형평에 있습니다. 형평을 잃은 입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헌시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법 제정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택지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93년에 내려졌습니다.

가령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택지소유상한제 전반에 대한 것이지, 유독 187명의 경우에만 특별히 위헌소지가 더 큰 것도 아닙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187명에 대해서만 부담을 없애 주려는 것은 위헌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에서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대상과 정도, 그리고 기간 또한 지나치게 확대돼 있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87명 중에는 택지면적에 비해 건물면적이 매우 커서 주택의 효용을 심히 훼손하지 않는 한 초과택지를 떼어서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부담금을 무는 것이 딱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 건물면적의 일정배수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택지에 한해 건물의 내구년한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안은 187명 전원에 대해 7년 동안 초과택지를 처분하지 않은 이유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초과택지면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전체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며 그 면제기간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한정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아무리 보아도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법안은 토지공개념의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특혜를 주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택지소유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오랫동안 법의 취지에 순응해 택지를 처분한 다수의 사람에게 도리어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형평을 잃은 법안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의 취지를 무시하며 수년간 버티 온 소수 국민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토지공개념을 엄격히 시행하고 입법의 권위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9.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4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9항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0항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2항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

(20시47분)

○의장 김수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3항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를 상정합니다.

(참 조)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를 심사보고서

(통일외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간 30일간의 제184회 임시국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소간 진통과 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한 국회운영의 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치,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또 행정규제기본법 등 총 70여 건의 민생관련법안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여망에 다소나마 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선도적 입장에서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특히 국가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의사를 마치고 이것으로 회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산회)

○출석 의원 수(236인)

○출석 국무위원

농 립 부 장 관	정 시 채
환 경 부 장 관	강 현 욱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손 학 규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이 환 균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신 상 우
총 무 처 장 관	김 한 규

○출석 정부위원

교 육 부 차 관	이 영 탁
농 립 부 차 관	조 일 호
통 상 산 업 부 차 관	한 덕 수
환 경 부 차 관	윤 서 성
보 건 복 지 부 차 관	전 계 휴
노 동 부 차 관	우 성
총 무 처 차 관	우 근 민
법 제 처 차 관	김 흥 대

【보고사항】

○의안 제출

광주민중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7월 30일 박상천·이정무·남궁진·구천서·국창근·이의익·류선호·변웅전·신기남·박신원·한영애·이재선·정세균·박구일·이기문 의원 외 108인 발의)

고비용정기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7월 30일 박희태 의원 외 157인 발의)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7월 30일 박희태·박상천·이정무 의원 외 278인 발의)

○의안 심사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6월 23일 정부 제출)

(7월 30일 통상산업위원장 보고)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법률안

(6월 25일 정부 제출)

(7월 30일 통신과학기술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안

(6월 23일 정부 제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6월 25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30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1996년 11월 26일 이강두·이우재·김영진·

이길재·권오을 의원 외 80인 발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6월 25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6월 25일 정부 제출)

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안

(7월 3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30일 통신과학기술위원장 보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법률안

(1996년 11월 14일 정부 제출)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4일 정부 제출)

호소수질관리법안

(4월 26일 정부 제출)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6월 5일 정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이상 3건 6월 12일 정부 제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6월 23일 정부 제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7월 4일 정부 제출)

(이상 9건 7월 30일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이상 15건 수정 의결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1996년 11월 21일 김영환·조홍규·장영달·

정호선 · 이부영 · 조영재 · 김선길 · 남궁진 의원  
외 12인 발의)

(7월 29일 통신과학기술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의안 철회

**고비용정차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7월 30일 박희태 의원 외 157인 발의)  
7월 30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철회

**단미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청원**

(1997년 6월 10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4-1 영빌딩 304호 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  
협회대표 박석남으로부터 차수명 · 김원길 ·  
김범명 의원 외 69인의 소개로 제출)  
7월 30일 청원자와 소개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7월 21일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